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23

언 론 사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전북도민일보)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4
대표이사 신호균

심의대상기사 2026년 4월 2일자 1면 「남원 이정린·양충모 공동1위…무주 윤정훈 선두」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무주군수, 장수군수)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기사 제목과 이미지에 예비후보자 간 우열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제2호 및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2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선거기사로서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
2.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한 경우
3.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발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거나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
4.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경우

제8조(여론조사 보도) 여론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전 6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한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2.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또는 축소·과장하여 해설한 경우
3.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
4. 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 전제조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경우
5. 여론조사결과를 그래프, 그림, 표 등의 형태로 보도하면서 경쟁자나 경쟁집단간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24

언 론 사 주식회사 남양미디어(강진일보)
전남 강진군 영랑로3길 6, 3층
대표이사 주희춘

심의대상기사 2026년 4월 9일자 8면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강진군수)와 관련하여, 강진군수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여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2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25

언 론 사 주식회사 내외뉴스통신(내외뉴스통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 1149호
대표자 사내이사 김광탁

심의대상기사 2026년 3월 31일자 전국면 「설현수 더불어민주당 밀양시의원 다 선거구 예비후보 정책
공약발표」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밀양시의원)와 관련하여, 밀양시의원 다 선거
구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마 선언 소식을 보도하며 홍보 포스터를 그대로
게재하여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2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26

언 론 사 주식회사 강남내일신문(주간 강남내일신문)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46, 경원하이츠텔 1113호
대표이사 김성화

심의대상기사 1. 2026년 3월 26일자 4면 「트리플 김현기' 전 서울시의회 의장, 강남구청장 출마 선언」
제하의 기사
2. 2026년 4월 2일자 1면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후보 김현기 서울시의원 확정!」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강남구청장)와 관련하여, 강남구청장에 출마하
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마 선언 소식을 보도하며 기자회견문의 상당 부분을 요약하
여 실었을 뿐만 아니라 홍보 포스터를 그대로 게재하여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2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중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27

언 론 사 주식회사 고성시사정보(고성시사신문)
경남 고성군 송학로 173
대표자 사내이사 김윤희

심의대상기사 1. 2026년 4월 3일자 2면 「“군민 곁에 늘 일하는 생활 정치를 실현 하겠습니다”」 제하의 기사
2. 2026년 4월 10일자 2면 「군민의 삶을 보듬는 이상근 고성군수 예비후보의 10가지 진심」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고성군의원 및 고성군수)와 관련하여, 고성군의원 및 고성군수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의 출마 선언 소식을 보도하며 기자회견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여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2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박 홍 래
김 중 국
박 은 태
한 기 천
신 우 열
김 형 철
이 보 연
장 승 진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28

언 론 사 주식회사 울산매일신문사(울산매일)
울산 남구 두왕로 337-1, 리더스파크 3층
대표이사 이동엽, 이연희

심의대상기사 2026년 4월 2일자 5면 「“교육비 부담 경감” “인성교육 정상화” “학폭 업무 줄일 것”」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울산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의 공약
발표 소식을 보도하며,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상대적으로 작게 보도하는 등 가능
한 범위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지 않아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
게 불리 또는 유리한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0조(사진게재) 제1호를 위반한 것으
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2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사진게재) 사진 또는 이미지를 포함한 선거기사가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게재하지 않은 경우
2.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게재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상을 유발하기 위하여 원본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한 경우
3. 선거운동 관련 사진보도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참가 인원이나 내용 등을 왜곡한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29

언 론 사 주식회사 새수원신문(새수원신문)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19번길 46-5, 1층
대표이사 신현성

심의대상기사 1. 2026년 3월 30일자 1면 「“정치인”이 아닌 ‘봉사자’로 언제나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제하의 기사
2. 2026년 3월 30일자 14면 「이오수 도의원, ‘봉사’하는 의정으로 지역 주민의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시길」 제하의 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의회 의원)에 출마하는 현직 경기도의회
의원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해당 예비후보자를 지나치게 옹호한 인터뷰 기사 및 편파
적인 표현을 사용한 언론사 내부 필진의 칼럼을 보도하여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9조(인터뷰 및 인용기사) 제3호,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2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9조(인터뷰 및 인용기사) 인터뷰 및 인용기사 관련보도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와 관련한 인터뷰 또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이나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사실관계 등을 왜곡 또는 변형하여 게재하거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2. 선거와 관련한 견해나 반응,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상반된 입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지 않은 경우
3. 인터뷰한 상대방을 지나치게 옹호 또는 비하하거나 의사를 왜곡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기사를 게재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사 내·외부 필진의 의견(칼럼, 기고 등을 포함한다)을 게재한 경우
3.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칼럼 등을 게재한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30

언 론 사 유한회사 전남미디어(영암군민일보)
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문로 15, 1층
대표자 이사 김유인

심의대상기사 1. 2026년 4월 3일자 2면 「‘이재명 혁신파트너’ 우승희 예비후보 ‘민생지원금 20만원’
추가 지급 약속」 제하의 기사
2. 2026년 4월 3일자 5면 「‘기회’에서 ‘행복’으로 청년정책 업그레이드」 제하의 기사
3. 2026년 4월 3일자 9면 「‘인구 10만 중심도시 초석’ 다진다」 제하의 기사
4. 2026년 4월 3일자 11면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영암을 부자 되게」 제하의 기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
2. 유한회사 전남미디어는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하는 영암
군민일보 2면에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을 상자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의 소재목(4월 3일자 기사 2면 <“이재명 정부 기조에 발맞춰 고유가
위기 극복에 영암군이 함께하겠다”>)과 같은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
의 본문 활자 및 크기로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영암군수)와 관련하여, 기사의 내용과 편집에
있어 특정 예비후보자의 공약 등을 홍보 포스터와 함께 게재하며 특정 일자에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한 반면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보도는 현저하게 적게 다루었고,
이는 예비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 형평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2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2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박
김
박
한
신
김
이
장
정
홍
종
은
기
우
형
보
승
혜
래
국
태
천
열
철
연
진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내용 : 본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암군수에 출마 예정인 특정 예비후보자의 공약 등을 홍보 포스터와 함께 게재하며 특정 일자에 여러 차례(2026년 4월 3일자 2면 「‘이재명 혁신파트너’ 우승희 예비후보 ‘민생지원금 20만원’ 추가 지급 약속」 등 4건) 부각 보도한 반면 다른 예비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현저하게 적게 다루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2항 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 제2호를 위반함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31

언 론 사 대구경북일보 주식회사(대구경북일보)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뒷길 57
대표자 사내이사 이종훈

심의대상기사 [별지] 기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성군수)와 관련하여, 기사의 내용과 편집에 있어 특정 예비후보자의 동향 및 공약 등을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한 반면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보도는 현저하게 적게 다루어 예비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 형평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2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2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별지]

심의대상기사 목록

1. 2026년 3월 31일자 7면 「“여객은 군위, 물류는 의성” 최유철의 승부수」 제하의 기사
2. 2026년 4월 2일자 1면 「의성 농산물, 신공항 타고 전 세계 하늘길 오른다」 제하의 기사
3. 2026년 4월 6일자 7면 「최유철, “농사짓던 의성, 비행기 고치고 드론 띄운다”」 제하의 기사
4. 2026년 4월 9일자 7면 「최유철, 신공항 등에 업고 ‘교통 혁명’ 승부수」 제하의 기사
5. 2026년 4월 13일자 7면 「‘AI·드론·위성’ 결합한 초정밀 안전망 구축」 제하의 기사
6. 2026년 4월 14일자 7면 「“공항만 들어오면 끝? 사람이 살아야 진짜 도시다”」 제하의 기사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32

언 론 사 현대일보 주식회사(현대일보)
인천 중구 셋골로 61
대표자 사내이사 권오륜

심의대상기사 [별지] 기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하남시장)와 관련하여, 기사의 내용과 편집에 있어 특정 예비후보자의 동향 및 공약 등을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한 반면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보도는 현저하게 적게 다루어 예비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 형평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2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2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별지]

심의대상기사 목록

1. 2026년 4월 1일자 4면 「주민 재산권 보호 ‘원도심 전면 종 상향’ 공약」 제하의 기사
2. 2026년 4월 2일자 4면 「“시민 출퇴근 이동불편 해소 최우선 과제”」 제하의 기사
3. 2026년 4월 3일자 2면 「“한예중·포스텍 AI+X 대학원을 하남시로”」 제하의 기사
4. 2026년 4월 8일자 3면 「“하남시,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제하의 기사
5. 2026년 4월 9일자 3면 「텅 빈 지식산업센터 ‘청년 꿈터’로 바꾼다」 제하의 기사
6. 2026년 4월 10일자 3면 「강병덕 하남시장 예비후보, 선거 판세 중심축 부상」 제하의 기사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제9회 지선-자심33

언 론 사 주식회사 세명일보(세명일보)
경북 안동시 마지락길 3
대표이사 김창원

심의대상기사 [별지] 기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영주시장)와 관련하여, 기사의 내용과 편집에 있어 특정 예비후보자의 동향 및 공약 등을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한 반면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 예비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 형평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2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2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별지]

심의대상기사 목록

1. 2026년 3월 19일자 6면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 관광·부자농촌 등 ‘영주 재도약 위한 5대 공약 발표」 제하의 기사
2. 2026년 3월 23일자 6면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 “교통의 중심, 첨단 미래산업도시 영주”」 제하의 기사
3. 2026년 3월 25일자 6면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 “영주를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레저도시로”」 제하의 기사
4. 2026년 3월 26일자 6면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 “농가소득 2배·청년농업인 200명 유입”」 제하의 기사
5. 2026년 3월 30일자 6면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 영주재도약 5대 공약 발표」 제하의 기사
6. 2026년 4월 1일자 6면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 ‘영주 재도약 위한 5대 핵심공약 발표」 제하의 기사
7. 2026년 4월 2일자 6면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 ‘영주 재도약 릴레이 공약’ 두 번째 과제 발표」 제하의 기사
8. 2026년 4월 6일자 6면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 “로봇이 농사짓고 드론이 축사 관리한다”」 제하의 기사
9. 2026년 4월 7일자 6면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 ‘차세대 식의약 소재 산업 육성 공약 발표」 제하의 기사
10. 2026년 4월 8일자 6면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 “막힌 도로 하나 못 뚫으면 경제도 없다”」 제하의 기사
11. 2026년 4월 9일자 6면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 “산업은 준비됐다. 이제 길을 뚫는다”」 제하의 기사
12. 2026년 4월 14일자 6면 「“생태교육시설 유치로 ‘배우고 머무는 영주’로”」 제하의 기사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하는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

결정

의결번호 제9회 지선-시심4

시정요구인 서필상

피시정요구인 함양신문 주식회사(함양신문)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3길 9-8
대표이사 김광수

심의대상기사 2026년 4월 13일자 3면 「더불어민주당 송경열 함양군수 예비후보 당 공천 불복 민주당 중앙당에 공천재심 신청」 제하의 기사

- 주 문 1.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함양신문 3면 상단에 **[별지 1]** 반론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심의대상기사의 소제목(심의대상기사에서 제목 중 ‘더불어민주당 송경열 함양군수 예비후보’ 부분)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본문은 심의대상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하여야 한다.
2.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신청취지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별지 2]**의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요구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심의대상 기사를 통해 시정요구인의 경선 경쟁 상대였던 송경열 예비후보가 공천 불복에 따라 공천 재심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시정요구인이 2022년 지방선거 후보 사퇴 당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는데 공천 심사과정에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전혀 아니고, 당시에는 공천관리심사위원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출마 의사 자체가 없었음에도 피시정요구인이 객관적인 사실확인 절차 없이 송경열 예비후보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도의 근거가 된 녹취록 당사자가 ‘취중에 한 말이고 발언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기자간담회도 가졌으며, 심의대상기사의 보도 시점도 이미 재심 기각 결정이 나온 뒤였다는 점에서 피시정요구인은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면서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구하였다.

피시정요구인은 ‘시정요구인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이며, 당시 시정요구인이 군수 불출마 기자회견을 했다는 점, 녹취록이 구체적이고 2022년 지방선거 정황 등을 미루어보면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요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재심 기각 결정 이후에 보도하게 된 것은 이미 기각 결정일 하루 전에 지면의 편집과 인쇄가 완료되었기 때문이고, 피시정요구인은 당내 공천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오히려 시정요구인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혹들과 관련하여 답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양측이 제출한 내용과 소명자료만으로는 공천 재심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실만 확인 가능할 뿐, 실제로 당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녹취록의 내용이 진실한지 등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허위 사실 여부와 관련하여 실제적 진실을 명확히 가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심의대상기사의 내용이 선거에 관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시정요구인에 대한 여론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 반하여, 심의대상기사에는 시정요구인의 반론은 일부만 반영되어 있고, 재심 결정 결과를 확인하는 등의 취재 과정이 충실하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심의대상기사는 시정요구인 및 여타 예비 후보자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권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및 공정한 여론 형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반론보도문 게재와 함께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제8조의2 제6항,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4. 2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박	홍	래
	부위원장	김	종	국
	위원	박	은	태
	위원	한	기	천
	위원	신	우	열
	위원	김	형	철
	위원	이	보	연
	위원	장	승	진
	위원	정	혜	진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내용

1. 제목 : [반론보도] <민주당 송경열 함양군수 예비후보 공천재심 신청> 관련
2.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13일자 3면 <더불어민주당 송경열 함양군수 예비후보 당 공천 불복 민주당 중앙당에 공천재심 신청> 이라는 제목으로 송경열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지역위원장이던 모 후보가 본선 등록 하루 전 후보 등록을 포기했으며, 사퇴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이 거래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 후보로 활동 또는 등록하거나 사퇴한 사실이 없으며, 후보 사퇴 과정에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이 거래되었다는 사실 및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해당 공천재심 신청은 지난 4월 10일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별지 2]

시정요구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목 : [정정보도]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예비후보 금품수수 의혹> 관련
2.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13일자 3면 <더불어민주당 송경열 함양군수 예비후보 당 공천 불복 민주당 중앙당에 공천재심 신청> 이라는 제목으로 사실확인 없이 서필상 후보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 사퇴와 관련하여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자로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서필상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 후보로 활동 또는 등록하거나 사퇴한 사실이 없으며, 송경열이 주장하는 후보 사퇴 과정에 5,000만원의 금품이 거래되었다는 사실은 물론,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심의·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선거법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삭제 <2017.2.3.>
2.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3. 경고결정문 게재
4. 주의사실 게재
5.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선거기사의 편집 및 배열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확대, 과장, 누락, 축소한 경우
5.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 또는 대리인들 간의 대담, 토론을 보도하면서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이 다른 후보자나 이해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6.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다르게 축소·과장 또는 왜곡된 경우
7.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보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경우, 또는 비교평가를 하면서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경우
8.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9.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경우